조선문제가 국제화되기까지 4

더욱 복잡해진 조선문제



더욱 복잡해진
조선문제

조선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 106(2017)년

차 례

1.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미제는 전후에 저들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대량보복》하기 위한 대조선국제화책동에 적극 매달렸다.

우선 미제는 핵타격으로 조선을 타승할 꿈을 꾸며 이 범죄적계획의 실현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였다.

핵무기로 공화국을 타격하기 위한 미제의 기도는 이미 조선전쟁시기부터 시작되였다.

당시 호전광 트루맨은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할수 있다.》고 폭언하였다.

미극동사령부에 파견되였던 죤스 홉킨스대학 작전연구소가 1951년 12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제는 당시 히로시마원자폭탄의 2배이상의 위력을 가진 40Kt급원자폭탄 6개를 조선반도에 투하할 계획을 세운바 있다.

뿐만아니라 1953년 5월 19일 브래들리가 아이젠하워에게 조선에서 《핵폭탄의 전략, 전술적 사용》을 실행해야 한다는 미합동참모본부의 견해를 피력한 편지를 보냈고 다음날 아이젠하워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계획을 승인했다는

사실도 폭로되였다.

이처럼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있었던 미제는 전후에 그것을 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저들의 목적실현에 써먹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당시 미제가 핵전쟁책동에 광분한것은 조선전쟁에서 저들이 패배한 주요한 원인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데 있으며 따라서 전후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전쟁에서 사용하였던 구식무기, 재래식무기가 아니라 전술원자무기, 핵무기로 무장하여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데 있었다.

미제는 우선 조선전쟁이 재발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것과 함께 여기에 추종국군대들을 또다시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미극동사령부의 1953년 11월 2일부 극비작전계획 《8-53》과 그 부록, 1954년의 작전계획 《10-54》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는 조선전쟁재발시에 50～200발의 핵탄과 미제가 1953년 1월에 개발한 280㎜원자포를 리용하여 북조선에 지상, 해상, 공중공격을 가한다는 핵전쟁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처럼 미제는 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제놈들이 또다시 도발하려는

전쟁을 핵전쟁화하며 이 전쟁을 국제화하여 《유엔군》을 재차 가담시키려고 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명의로 작성된 핵전쟁계획은 곧 미제의 북침핵전쟁계획이며 미제가 이 계획을 《유엔군사령부》라는 미명하에 작성하였다는것은 조선전쟁이 재발되는 경우 추종국가군대들을 저들의 지휘통제하에 두고 거기에 《유엔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조선전쟁에 투입시키려고 한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미제는 또한 조선반도주변지역을 핵기지화하여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핵봉쇄망을 형성하려고 책동하였다.

여기서 미제가 주되게 노린것은 조선반도주변의 추종국가들을 핵무장화함으로써 지역적핵무장체계를 갖추려는것이였다.

이것은 1958년에 미제가 고안해낸 《전방전략》이라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전방전략》에서 기본은 《핵무장에 의한 지역적집단자위론》인데 이는 미제가 1958년 4월에 발표한 《국방테제》 등에 의하여 더욱 명백해졌다. 그 골자를 묶으면 다음과 같다.

전략의 기본방향은 전술핵무기의 지원에 의한 《한정》전쟁의 준비이다. 이 전쟁은 《원자전격전》으로 될수 있다.

이로부터 핵무기, 미싸일의 개발과 실험에 전력을 기울인다.

《나토》, 《쎈토》, 《세아토》 등 군사뿔럭성원국들에 대한 핵무장화를 다그치며 특히 서도이췰란드와 일본의 핵무장화에 힘쓴다.

사회주의나라들을 포위하고있는 기존 해외군사기지(250개)외에 새로 유럽과 중동, 극동, 동남아시아에 핵무기고와 중거리탄도미싸일기지를 설치한다.

남조선, 일본, 대만에 의한 《네아토》결성을 다그친다.

보는바와 같이 이 전략이 주요하게 노리는것의 하나는 추종국가들에 대한 핵무장화로써 지역적핵무장체계를 갖추려는것이였다.

물론 《전방전략》은 미국에 앞서 이전 쏘련이 먼저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1957년 8월 26일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시험성공, 1957년 12월 4일 그것을 증명하는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성공) 미국본토는 물론 해외군사기지들도 모두 이전 쏘련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사정거리안에 들어가며 그 공격목표로 된다는데로부터 《대량보복전략》(이 전략은 미국《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보복력을 행사한다.》는 광란적인 핵전략구상이였다. 《대량보복

전략》은 《침략》 또는 《분쟁》이라는 구실밑에 조선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한것으로써 세계제패전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극히 위험한 《전쟁접경》계획이였다. 이 전략은 주로 미전략공군을 주력으로 하는 핵전력의 《우세》에 의존하고있었으며 이전 쏘련의 핵보복력이 미전략공군이나 미국본토에 닿지 못하는 중거리미싸일에 국한되여있는것을 전제로 하였다.)을 수정하여 제창된것이였지만 미제가 지역적핵무장체계를 갖추는데서 이 전략의 기본지역의 하나로 간주하고있는 곳이 바로 조선반도주변지역이였다.

조선반도주변지역의 핵무장화는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위협으로 되며 그것은 일단 조선전쟁이 재발되는 《유사시》에 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미제의 핵무기에 의한 보복타격으로 된다.

미제는 일본과 남조선,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지역을 핵기지화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핵봉쇄망을 형성하고 조선이 국력을 소모하게 하며 《유사시》에는 《원자전격전》으로 조선을 《보복소멸》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이전 쏘련을 핵타격으로 《격멸》함으로써 세계제패전

략의 목적을 달성할것을 꾀하였다.

이처럼 미제가 내놓은 그 무슨 《전쟁계획》들이라는것을 놓고 보아도 미제가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추종국들과 합세하여 조선에 핵무기에 의한 《보복타격》을 가하려고 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침략적인 군사쁠럭을 조작하려고 한데서도 나타났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쁠럭조작책동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동북아시아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한것이다.

《동북아시아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군사포위망을 형성하여 고립압살시킴으로써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며 더 나아가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여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었다.

일찌기 1949년에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한 미제는 《집단방위》라는 간판밑에 남태평양과 중근동,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에서도 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추종국가들로 조선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달형으로 포위하기 위한

《반공전략선》을 형성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1951년 태평양의 남쪽기슭에서 《안쥬스동맹》의 조작, 1954년 《동남아시아조약기구》(《세아토》)의 조작, 1955년 중근동에 《바그다드조약기구》(《쎈토》)의 조작 등을 실현한 후 미제는 곧 극동지역에서 《동북아시아군사동맹》(《네아토》)을 조작하려고 날뛰였다.

《동북아시아군사동맹》조작을 위하여 미제는 1951년 9월 8일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1953년 8월 8일 남조선괴뢰들과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하고 그에 기초하여 필리핀, 대만, 타이를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묶어세워 《동북아시아군사동맹》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미제가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괴뢰들과 《미일안전보장조약》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한 목적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을 저들에게 군사적으로 종속시키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사이에 쌍방적군사협정을 체결하게 하여 정치군사적으로 결탁시킴으로써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형성한 다음 이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추종국들을 규합하려는데 있었다.

이렇게 되면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군사적결탁관계가 강화되여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동을 공동으로 취하게 될것이며 여기에 미제의 추종국가들까지 합세하면 공화국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포위망이 완결되게 되는것이다.

여기에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조선국제화책동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책동의 반동성이 있다.

그후 추종국가들을 《동북아시아군사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미제는 1954년 12월 2일에 대만과 《안전보장조약》이라는것을 체결하였으나 조선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미제의 《동북아시아군사동맹》조작책동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미제는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문제를 국제화하며 조선을 반대하는 재침책동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조선을 보복하는 재침책동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미제의 책동은 벌써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그날부터 시작되였다.

1953년 7월 27일 미제는 조선전선에 고용병을 파견하였던 추종국졸개들을 워싱톤에 불러다놓고 이른바 《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미

제의 강요에 의하여 조작된 《선언》의 기본내용은 조선전쟁이 다시 발발될 경우 추종국가들은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들을 다시 조선전선에 투입하며 이 전쟁에서는 《적대행동을 절대로 조선국경내에 국한시킬수 없을것》이며 원자탄사용도 《불사》할것이라는것이였다.

이 도발적인 《선언》과 함께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정전협정에 조인한 미제침략군사령관 클라크는 조선에서 전쟁이 재발되는 경우에 《미군은 즉시 이와 공동행동을 취할것》이라는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미제는 한편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나라들의 이름으로 중립국시찰소조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는 범죄행동도 감행하였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뽈스까,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위원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조난사건(비행기추락, 화재, 불시착륙, 자동차사고로 3명 사망, 1명 부상)을 조작해오던 미제는 1956년 5월 26일 워싱톤에서 추종국들의 《회의》를 벌려놓고 《중립국시찰소조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하는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6월 8일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시찰소조원들의 24시간내 철수를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6월 9일 0시부터 시찰소조의 활동은 정지되였다.

미제가 중립국시찰소조를 강제로 축출시킨 목적은 저들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핵무기를 비롯한 무력증강에 대하여 감시하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시끄러웠기때문이며 이를 없애버림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보복타격》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준비를 로골적으로 하기 위한데 있었다.

미제는 이러한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거기에 여러 추종국가들의 이른바 《국제회의결정》이라는 외피를 씌워놓았던것이다.

중립국시찰소조를 강제축출시킨 미제의 범죄적만행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이다.

조선정전협정 제13항 ㄹ목에는 《조선경외로부터 증강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것을 정지한다.》고 규제되여있으며 제40항 ㄱ목은 중립국시찰소조가《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고 지적하고있다.

미제의 책동은 무력증강을 로골적으로 하겠다는 도전인 동시에 조선전쟁에 교전국으로 참가하지 않은 중립국가들의 권한을 람용한것으로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엄중한 위법행위로 된다.

조선을 반대하는 재침책동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나포된 1968년 1월 미제는 조선에서 전면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광분하면서 이 경우 저들의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긴급나토각료회의》니 《조선전쟁참전국회의》니 하는것까지 벌려놓고 추종국가들을 조선전쟁에 또다시 투입시키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그 무슨 《북조선으로부터의 무력도발》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줄것을 요구하여 영국, 프랑스, 뛰르끼예, 필리핀, 타이, 남부웰남 등의 정부에 정식 《요청문》을 내도록 적극 부추기였다.

그후 미제는 《1983년 국방보고서》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동맹국군사력과 함께 북조선을 공격》할것이라고 밝힌것을 비롯하여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에 추종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각방으로 분주탕을 피웠다.

이처럼 미제는 전후에 공화국북반부를 《보복》하기 위한 재침책동, 국제적포위망형성책동을 악랄하게 벌리였으며 일단 조선에서 전쟁이 재발되는 경우 저들의 추종국가들을 여기에 끌어들여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기어이 앙갚음하여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2. 파렴치한 《두개 조선》정책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을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분렬책동이다.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침략이 파탄된 1953년이후부터 모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정책》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것은 1960년대초이며 그것을 세상에 공식 발표한것은 1970년대초라고 볼수 있다.

《두개 조선》정책은 당시 미제의 대조선전략에서 기본으로 되였다.

미제가 《두개 조선》정책을 대조선전략으로 내세운 리유는 우선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여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이 실현될수 없다고 보게 된것과 관련되였다.

국제무대를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저들의 침략행위를 《합법화》하고 전조선을 지배하려던 미제의 책동은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공화국북반부에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꾸려지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이 일떠서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남조선만이라도 저들의 식민지로 영원히 틀어쥠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또한《두개 조선》정책을 실현하여 남조선을 침략적인 군사기지로, 사회주의방파제로 리용하려고 하였다.

미제는 조선의 분렬이 고정되여야 이른바《남침위협》의 구실로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기지로, 핵전초기지로 확고히 틀어쥘수 있으며 사회주의방파제로 리용할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미제의《두개 조선》정책은 조선에 대한 민족분렬정책이고 반인민적정책이며 침략정책이다.

미제의《두개 조선》정책의 반동적본질은 첫째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민족분렬정책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우선 나라의 완전독립과 자주권을 유린한다는데 있다.

미제의 조선민족분렬정책으로 조선의 절반땅은 미제침략군의 강점하에 놓이게 되였으며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으며 미제의 전횡으로 하여 민족적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다.

그리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은 확립되지 못하고있다.

미제의 민족분렬정책과 식민지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사람으로서 응당 행사하여야 할 자주권, 생존권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있다.

미제에 의한 인공적인 나라의 분렬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번영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민족분렬상태가 지속되면 조선민족은 영원히 《두개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영영 벗어날수 없게 될것이다.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의 반동적본질은 둘째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에 역행하는 반인민적정책이라는데 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것은 조선민족의 사활적요구이다.

조선민족은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반만년동안 한강토우에서 단란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조선민족사에는 외부의 원쑤들로부터 침략을 받은적은 있어도 결코 그것으로 하여 분렬되여 살아본적은 없다. 온 겨레는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 살기를 원하며 기어이 민족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떨쳐나서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념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개 조선》조작을 정책화하는데로 나아갔다.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의 반동적본질은 셋째로, 남조선을 지탱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정복하려는 침략정책이라는데 있다.

미제는 《두개 조선》정책을 통하여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려고 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면서 일단 때가 오면 전조선을 가로타고앉으려고 하고있다.

이처럼 미제의《두개 조선》정책은 조선을 영원히 《두개 국가》로 갈라놓기 위한 분렬고정화정책이였다.

미제는 이렇듯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두개 조선》정책을 국제무대를 통하여 실현시키고 인정시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해 미제는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정치회의를 고의적으로 파탄시켰다.

미제는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의부터 결렬시켰다.

조선정전협정 제60항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

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내에 각각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정전협정에 규정된 정치회의의 기본목적은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들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데 있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있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투쟁과 노력에 의하여 1953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는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쌍방예비회담이 열리였다. 회담은 11월 16일까지 13차에 걸쳐 진행되였으나 미제의 회담지연전술로 성과없이 끌나고말았다.

예비회담이 결렬된 후 공화국의 진지한 노력의 결과에 의하여 11월 하순에 다시 쌍방대표회의가 열렸으나 문제토의를 지연시킨 미제의 교활한 책동에 의하여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의는 끝내 1954년 1월 14일에 결렬되고말았다.

미제가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의를 결렬시킨 목적의 하나는 조선문제를 토의하는 정치회의 그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분렬상태에 있는 조선을 그대로 고착시키자는데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만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추종국가들의 지지밑에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자는데 있었다.

미제는 예비회의과정에 정치회의참가성원국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일방으로 하고 미국과 조선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였던 추종국가들을 다른 일방으로 하자고만 고집하였지 정치회의의 순조로운 보장을 위하여 이전 쏘련, 인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먄마를 포함한 5개의 중립국가들을 회의성원국으로 포함시키자는 공화국의 제의를 집요하게 반대하였다.

이전 쏘련, 인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먄마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과 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있는 중립국가들이다. 이 나라들이 정치회의에 참가하게 되면 조선문제가 미제의 의도대로 진척되지 못하리라는것은 뻔한 일이였다.

이런 중립국들을 제쳐놓고 정치회의를 소집

하자는것은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두개 조선》정책을 추종국들을 발동하여 끝끝내 인정시키려는 미제의 교활한 책동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미제는 정치회의에 어떠한 나라들이 참석할것인가 하는것을 예비회의의정에 포함시키는것을 반대하였으며 이것만으로도 수십일간이나 문제토의를 지연시켰던것이다.

또한 미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당한 조건들을 내세워 정치회의를 파탄시켰다.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의가 결렬된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1954년 2월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 열린 이전 쏘련, 프랑스, 미국, 영국 4개국외무상회의에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제네바정치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베를린외무상회의가 소집되기에 앞서 1월 10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문제를 포함한 긴급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였다. 베를린외무상회의는 이 요구를 반영하여 제네바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문제에 관한 제네바회의는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스위스에서 진행되였

다. 회의에는 조선과 이전 쏘련, 중국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하여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추종국가들이 참가하였다.(남아프리카는 제외)

제네바정치회의에서 미제는 조선의 민족적통일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적통일국가를 세울 목적으로 전 조선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감독밑에 총선거를 실시할것과 조선에서의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킬것을 제기한 공화국북반부의 거듭되는 주장에 반대되는 립장을 고집하였다.

미제가 회의에 참가한 추종국가들을 발동하여 내놓은 주장이란 다음과 같다.

조선문제취급에 대한 유엔의 권한과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며 유엔이 문제해결의 주동적역할을 놀아야 한다.

남북조선 비례대표제에 따라 《유엔의 감시》밑에 조선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엔군》은 조선이 통일독립되여 유엔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

보는바와 같이 회의에서 고집한 미제의 조건이란 전조선에서의 《총선거》를 《유엔의 감시》하에 실시하자는것과 《유엔군》의 계속되는 남

조선주둔이였다.

이것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열린 정치회의의 목적과는 상반되는것이였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감독밑에 전 조선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선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것으로 되며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외세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만일 《유엔의 감시》하에 조선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면 1948년의 《5.10단선》때처럼 남조선에서만의 일방적인 《선거》로 될것이며 미제의 거수기구인 《유엔조선통일부흥위원단》의 거짓날조에 의하여 남조선괴뢰들에게 유리한 《선거》로 될것이였다.

미제는 이것을 타산하였던것이다. 즉 전조선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하면 북조선이 반대할것은 자명한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과 남의 분렬은 더 오래 지속되고 결국은《유엔군》의 명분으로 주둔해있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게 될것이였다.

미제는 정치회의에서 조선의 정정당당한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6월 15일에는 저들의 주장을 미리 문서화한 추종국들의 《공동선언서》라

는것을 내놓음으로써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정치회의를 파탄시켰다.

그 무슨 《공동선언서》라는것은 조선통일문제에 유엔이 간섭할 권한 및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고집하는 미제의 립장을 되풀이하면서 회의파탄의 책임을 공화국에 전가시키는것에 불과하였다.

미제가 제네바정치회의를 통하여 노린것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아니라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겠다는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것이였다.

미제는 정치회의의 중요목적이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에 관한 문제라는데 대하여 동의하고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하고서도 정치회의를 앞두고 1953년 8월에 남조선괴뢰들과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합법화》하는《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한 후에 정치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러다나니 미제에게는 조선의 통일문제, 평화보장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미군의 남조선장기주둔과 조선의 영구분렬에 더 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이처럼 미제는 국제무대에서 조선의 영구분렬을 인정시키기 위하여 실현될수도 없는 부당

한 조건들을 내세움으로써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정치회의를 의도적으로 파탄시켰다.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해 미제는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을 추구하였다.

1960년대에 남조선괴뢰들을 내세워 《단계적통일론》, 《제도통일론》을 부르짖게 함으로써 《두개 조선》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을 교묘하게 벌려오던 미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개 조선》조작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더욱 확고히 내세우게 되였다.

이 배경에는 국제국내적인 심각한 정세변화가 놓여있었다.

미국에서의 반전운동, 흑인운동이 벌어지고 딸라의 국제적지배력이 상실되였으며 특히는 핵무기의 전략적균형이 이루어져 미제가 제 마음대로 핵무기를 휘둘러대던 시대는 지나가버렸다. 라오스, 웰남,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개입은 참패로 끝났고 발전도상나라들이 크게 성장하여 미국에 도전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침략의 중심무대를 다시금 조선반도에 옮겨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려고 하였다.

한편 조선반도에서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쑈독재하에서도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유엔의 이름으로 남조선을 조선반도의《유일합법정부》로 내세워오던 미제의 정책은 세계무대에서 완전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날로 높아갔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엔에서 조선반도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해나섰으며 《유엔조선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갔다. 이런 정황이 조성되자 미제는 조선의 북과 남을 국제무대에서 《두개국가》로 인정시켜 남조선괴뢰정부를 합법적인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미제는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안》이라는것을 내놓게 되였다.

미제가 내놓은 《유엔동시가입안》의 반동적본질은 북과 남을 유엔에 동시에 가입시킴으로써 조선의 북과 남을 서로 다른 독립국가로 만들고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국제적으로 《비법화》하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전쟁의 온상으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조선이 분렬된 상태에서 북과 남이 각각 유

엔에 들어가는것은 《두개 국가》로서의 조선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아 조선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미제가 유엔에 가입하는 모든 나라들은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존재와 지위를 인정받는 일반적국제관례를 조선의 북과 남에 적용함으로써 《두개 조선》을 영구화하려는 분렬주의적속심을 드러내놓은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을 내세워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을 추구하는 그 무슨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게 하고 일본반동들이 지지해나서도록 부추겼으며 그것을 국제무대에까지 들고다녔다.

미제는 박정희를 내세워 1973년 6월 23일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성명》(7개 항목으로 된 이 《성명》을 《6.23특별성명》이라고 한다.)을 발표하게 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제놈들의 속심을 공식 선포하도록 하였다.

당시 박정희역도는 《특별성명》이라는데서 《…국제련맹(유엔)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련맹에 가입하는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련맹가입전이라도 〈대한민국〉대표가 참가하는 국련총회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북조선측이 같이 초청되는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제넘는 소리까지 줴쳤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은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닉슨정부(1969년～1974년)가 《두개조선》정책을 들고나오자 재빨리 그에 추종하여 그것을 저들의 《기본정책》으로 선언하고 국제무대에서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앞장에 섰다.

1972년 10월 일본총리 다나까는 첫 내각회의에서 《조선반도에 두개 조선이 존재한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으며》, 《두개 조선의 공존은 우리의 바람직한 외교목표》라고 떠벌이였다. 그후 일본반동들의 대조선분렬정책은 미끼, 후꾸다, 오히라, 스즈끼, 나까소네 등 력대 반동정부에 의하여 계속 집요하게 유지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유엔동시가입론》이 대두하였을 때 《남북동시승인문제의 제기는 현 상태보다 일보전진》이라느니 《남북조선의 유엔가입이 평화의 증진에 기여할것》이라느니 하면서 《두개 조선》조작책동에서 미제와 《공동보조》를 취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유엔동시가입안》의 적극적발기자로 동분서주하였다.

이렇게 저들의 추종국괴뢰들로 하여금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여론을 국제적으로 환기시

킨 미제는 추종국가들과 합세하여 1973년 9월부터 열리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북남유엔동시가입안》을 상정시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였다.

바로 이렇게 《유엔동시가입》이라는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있었기에 미제는 이보다 앞서 1972년 9월에 열린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비롯한 많은 평화애호국가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새로운 의정을 제기하였을 때 그것을 토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를 또다시 1년간 연기할데 대한 비법적인 《제안》을 비렬한 방법으로 강압통과시켰던것이다.

미제는 유엔총회무대에서 《북남유엔동시가입안》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서 그 어떤 새로운 국면이나 열어놓을듯이 떠들어대였다.

그러나 미제의 《북남유엔동시가입안》은 철두철미 《동서도이췰란드방식》을 모방한 분렬방안이였다.

동서도이췰란드는 1972년 11월 8일 국제조약이라는 법적문건인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과 도이췰란드민주공화국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동서도이췰란드의 두개 국가의 분

렬을 합법화, 국제화하였다.

동서도이췰란드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도이췰란드민족의 국가적통일의 리상과 목표가 력사적조건으로 보나, 현실적조건으로 보나 불가능하다는 호상인식밑에 분렬을 합법화한것이였다.

도이췰란드민족은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서 많은 나라로 분렬되여있었으며 분렬되여있은 기간이 통일되여있은 기간보다 훨씬 길었다.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도이췰란드의 력사는 통합과 분렬이 거듭 반복되여온 과정이였다. 프랑크왕국의 동서에로의 분렬→《신성로마제국》(도이췰란드인의 제국)에로의 통합→봉건제후들의 강대화에 의한 300여개의 제후국에로의 통합, 병존을 거쳐 프로씨아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여러 나라들의 통일 →제국주의도이췰란드의 성립(이것자체가 프로씨아왕국, 바이에른왕국, 작센왕국 등 많은 분리국가들의 집합체였다.) 등이 이것을 잘 말해준다.

이러한 력사적근원으로부터 도이췰란드민족은 국가의 분렬과 공존, 두개의 도이췰란드를 당연한것으로 여기게 되였던것이다.

또한 20세기에 도이췰란드가 분렬된 현실적경위를 보아도 도이췰란드는 다른 나라를 침략

한 제국주의국가로서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분할되였다.

그러나 조선민족은 수천년동안이나 단일민족으로 존재하여왔으며 조선은 8.15해방후 미제가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한 결과 분렬되였다.

이처럼 미제는 조선과 력사적조건이나 현실적조건이 전혀 다른 도이췰란드방식을 본따서 조선에 《두개 조선》, 《두개 국가》를 조작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하였다.

참으로 미제의 《유엔동시가입》책동은 조선의 북과 남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두개 국가》로서의 조선의 영구분렬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한 교활한 책동이였다.

3. 악랄한 경제제재와 봉쇄책동

조선전쟁이후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경제제재와 봉쇄를 통해서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경제제재와 봉쇄는 오만한 미제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악랄한 간섭책동의 하나이며 목조르기수법이다.

미제는 경제제재와 봉쇄를 무기로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 일방적인 강도적요구와 의사를 내리먹이고 고분거리게 만들며 진보적인 나라들을 고립질식시키고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를 씌우려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꺽하면 부당한 구실을 붙여 경제제재와 봉쇄를 들이대고있으며 여기에 추종국가들까지 끌어들이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류의 52%를 포괄하는 나라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있다고 한다.

국가의 법률적 및 정부적인 조치에 의한 이와 같은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미제의 침략적, 략탈적본성과 지배주의적야망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전후부터 추종국가들과 합세하여 공화국에

대하여 실시해온 미제의 비렬한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그 악랄성과 집요성에 있어서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제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이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조미사이의 모든 문제해결에서 저들이 주도권을 틀어쥐며 나아가서 무력으로 공화국을 제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결코 전쟁에서 패한 후 그에 대한 보복으로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인민이 일제의 총칼밑에서 해방되여 새조국건설에 들어선 그때부터 시작되였다.

미제는 8.15해방후 조선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나라 일반에 대하여 적용한 법적제재를 조선에도 가하였다.

1949년 11월에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라는것을 만들어낸 미제는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조선에도 경제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에는 아일랜드를 제외한 《북대서양동맹조약기구》(《나토》)성원국과 일본,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17개 나라가 망라되여있었는데 그 목적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전략》물자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경제건설을 방해하려는데 있었다.

미제는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조선을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대상 나라에 포함시켜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여 집단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미제는 이 기구를 통하여 전략물자는 물론 첨단기술과 발전된 기계설비, 전자 및 반도체제품 등 수출금지품목을 규정하고 규정된 품목에 해당한 제품을 조선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 기구성원국은 일정한 제품을 조선에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성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으며 해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기구내에서 강한 경제적제재를 받게 되여있었다.

미제는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를 조작하여 조선에 국제적인 경제제재와 봉쇄를 실시하였을뿐아니라 조선전쟁기간에는 공화국북반부를 제재압살하기 위한 국내법들을 만들어놓고 가장 악랄하고 비렬하게 책동해왔다.

그 몇가지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50. 6. 28. 《수출관리법》에 의한 조선에 대한 수출금지

1950. 12. 27. 《적국통상법》에 의한 미국

내의 공화국북반부의 자산동결, 통상 및 금융거래의 금지

1951. 9. 1. 《무역협정연장법》에 의한 조선에 대한 최혜국대우금지

미제는 조선전쟁을 일으킨 후 이와 같은 법들을 만들어놓고 공화국에 대한 무역 및 재정적 봉쇄를 실시하였다.

미제는 전쟁 전기간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조선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한편 경제제재를 위한 여러가지 법들을 통하여 조선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전시경제체제를 마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여기에 추종국가들까지 합세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조선에 대한 미제의 국제적인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해방후부터 시작되였다.

조선전쟁에서 패한 후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더욱더 끈질기게 감행되였다.

미제는 전후에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를 실시하는데서도 여러 나라들과 지어는 국제적인 경제제재기구까지 끌어들이면서 발악하였다.

미국법에는 《적성국가》인 조선과 그 어떤 관계나 거래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제되여있다. 때

문에 조선과 미국은 경제관계가 없다. 미제는 다른 나라들이 조선과 경제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미제는 경제적봉쇄와 질식을 위해 여러 나라들이 조선과의 경제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폭 줄이도록 강요하였으며 국제경제기구를 통하여 조선에 경제적제재를 가하도록 조종하였다.

전후에 미제는 조선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미제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적국통상법》,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등 무려 20여개이상의 각종 법률들에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조항들을 쪼아박아넣고 가동시키는 한편 추종국가들까지 발동하여 경제봉쇄정책을 발광적으로 실시하고있다.

대표적인 몇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1955. 8. 26. 《국제무기거래규제》에 의한 군수물자의 수출금지

1962. 8. 1. 《대외원조법》에 의한 대외원조금지

1975. 1. 3. 《통상법》에 의한 일반특혜관

세의 제공금지

1975. 3. 16. 《수출관리법》에 의한 포괄적 금수조치

1986. 10. 5.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미국수출입은행의 신용대부제공금지

1988. 1. 20. 《수출관리법》에 의하여 《테로지원국가》로 지정하고 무역, 일반특혜관세, 군수통제품품목상의 물자판매, 대외원조, 신용대부제공 등 금지

1988. 4. 4. 《국제무기거래개정규정》에 의한 군수물자 등의 판매와 수출입금지

1992. 3. 6. 《수출관리법》에 의한 미싸일, 전자, 우주, 항공, 군용기 등 군수통제품품목의 수출입 및 2년간 미국정부와의 계약금지

미제는 이와 같은 악법들을 통하여 미국무성의 허가없이는 공보물을 제외한 그 어떤 미국상품과 기술봉사도 직접적이든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든지 조선에 수출할수 없게 하고있으며 상품수출입과 관련하여 조선을 방조하는것조차도 봉사수출로 간주하면서 일체 못하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조선에 있건 다른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건 관계없이 공화국북반부공민들과는 일체 통상을 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또한 미국내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재산을 모두 동

결시키고 조선은행들이 다른 나라 은행들과 딸라결제를 하는 경우 미국은행들은 해당 자금을 무조건 동결시키도록 하고있으며 미국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친척들에게는 물론 기타 다른 목적에서도 단 한푼의 딸라도 송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미제는 조선에 대한 신용대부와 대외원조, 개별적투자가들의 투자까지도 일체 금지시키고 상속자나 유가족이 조선공민인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그들의 부동산을 동결시키는것은 물론 인체보험비까지도 받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자기나라 공민들이 조선을 공식방문하는 경우에조차도 숙박비와 식사비, 개인소비품구입과 같은 려행과 관련한 항목에만 딸라를 지출하고 다른 항목에는 단 한푼의 딸라도 지출할수 없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조선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미국인려행자들에 대해서도 100US$이하밖에 조선상품을 가져갈수 없도록 통제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봉쇄책동이 얼마나 악착스럽게 감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은 조선과 무역 및 금융거래를 한 미국인과 미국의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50만US＄이상의 벌금과 12년까지의 징역형을 들씌우고있는 단적인 실례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미제는 이렇게 저들의 악법들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항목을 여러가지로 악랄하게 규제한것과 함께 이 악법실현에 추종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국제경제기구가 공동보조를 취할것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막후에서 조종하고있다.

1970년대에 조선은 강철공업에 현대적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어느 한 나라에 2 000m^3짜리 용광로 2기를 주문하였었다. 그런데 미제는 이때에도 그 나라로 하여금 조선과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부추기고 압력을 가하여 끝내는 그것을 파기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이미전부터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군사, 전자, 항공, 해양분야의 기술수출과 무역통제를 하도록 조종해온 미제는 이 기구를 통하여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조치를 계속 실시하여왔다.

그것은 조선이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것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1970년대에 조선은 경수로를 들여다 전력생산의 기둥으로 삼을것을 결심하고 일부 발전된 나라들과 교섭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원자력발전소설비를

수출하는 나라들로서는 이전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과 쏘련 그리고 서유럽의 일부 나라들뿐이였다.

조선은 카나다, 스웨리예, 프랑스 등 서방나라들에서 돈을 주고 발전된 경수로를 사오려고 하였으나 미제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에 의한 집요한 방해책동으로 그것을 끝내 실현할수 없었다.

추종국가들과 국제경제제재기구를 통한 미제의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이전 쏘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에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미제는 국제무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것과 관련하여 1949년 11월에 조작해낸 낡아빠진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해오던 조선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수출통제를 변화된 국제적환경에 맞게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책동하였다.

미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에 더 많은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여 집단적인 경제봉쇄의 폭과 심도를 넓히기 위하여 1996년 7월 12일 무려 33개의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여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와쎄나협

정》이라는 수출관리체계를 조작해냄으로써(《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는 1994년 3월에 해체되였다.) 상용무기와 2중용도상품 및 기술을 수출하는데 관한 통제를 더욱더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는 추종국가들과 함께 《와쎄나협정》을 통하여 조선에 들여오는 각종 전략물자들과 그와 관련된 자재와 기술문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있다.

그후에도 미제는 공화국주민들의 생활과 경제를 파괴하고 의약품과 식량을 비롯한 필수품을 통제하기 위하여 추종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경제제재와 봉쇄에 끌어들임으로써 조선에 대하여 반인륜적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을 지속적으로 강행해오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조선의 주변나라들, 유럽동맹국들이 조선과 경제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압력을 가하고있다.

조선문제를 국제화하고 추종국가들을 발동하여 감행하는 미제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의하여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따라서 조선의 경제는 미제와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한걸음한걸음 매우 힘들게

전진하게 되였다.

이처럼 미제의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추종국가들과 어중이떠중이들, 지어 국제기구까지 발동하여 발악적으로 감행되는 집단적인 강도행위로서 제국주의자들이 지금까지 감행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제재가운데서도 가장 오랜 기간 계속되면서 날을 따라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는 끈질기고도 집요한 경제봉쇄책동이며 무역과 금융, 투자와 부동산, 보험과 주민래왕, 우편과 통신 등 대외경제관계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감행되는 전면적인 경제봉쇄책동이다.

바로 여기에 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의 특징이 있다.

미제는 이렇게 조선에 대한 끈질긴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을 벌림으로써 지난 조선전쟁기간 도시와 농촌을 무참히 파괴하고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인 저들의 주장을 립증하려고 하였던것이다.

미제의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대는 무지막지한 날강도행위이다.

1974년 12월 14일 유엔 제29차총회에서 채

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는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침략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서 다른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으로 규제하고 이것을 위반하는것을 경제적침략범죄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침략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타국에 경제봉쇄를 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 1974년 12월 12일 유엔 제29차 총회 제2위원회(경제 및 재정문제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가들간의 경제적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은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의 리해관계를 고려하면서 호상간의 경제관계를 가지는것을 의무로 규정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 특히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는 모든 나라들이 상업리권 그리고 온갖 경제활동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경제적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같이 국제법은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력, 봉쇄를 엄격히 금지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국제법 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조

선을 허물어보려고 추종국가들과 국제경제기구까지 발동하여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며 국제범죄행위이다.

미제가 국제법까지 위반하면서 감행하고있는 모든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조선을 고립압살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계선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가 제아무리 추종국가들까지 동원하여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을 국제화하여도 조선인민을 놀래울수 없으며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조선문제가 국제화되기까지 4

더욱 복잡해진 조선문제

편　집 : 김준혁

낸　곳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 주체106(2017)년 9월

ㄱ-7202244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

조선 · 평양
주체106(2017)년

ISBN 978-9946-0-1656-6
9 789946 016566 >